

## 심사결과보고

| 의안<br>번호 | 의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결과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4521     |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<br>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원안가결 |    |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 
경제복지위원회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4582 |
|----------|------|

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# 심 사 보 고 서

2026. 7. 27.

경제복지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7월 9일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9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 
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7.22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인용 근거와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'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'에서 '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변경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(2025. 11. 11.)에 따른 인용 위원회 명칭 정비

| 조 항     | 개정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후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제1항 |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<br>녹색성장 위원회 | 대전광역시 서구<br>기후위기대응위원회 |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류옥화)

- 안 제10조제1항 중 기존 ‘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를 상위법 취지에 맞춰 ‘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변경하는 것은 인용 근거를 최신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사항으로 행정기구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본 개정안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 관련 법상(상위법 제22 등)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

### 4. 질의 답변 요지: 생략

### 5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### 6. 소수의견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458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6. 7. 9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및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위원회 명칭 정비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마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 제외 대상

4) 성별영향평가 : 체크리스트 제출

5) 입법예고 : 2026. 5. 22. ~ 6. 11. / 제출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②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③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④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 
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 
“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<u>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br>1. ~ 5. (생략)<br>② ~ ⑧ (생략) |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 -----<br>-----.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② ~ ⑧ (현행과 같음) |

## 관계법령

### 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**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**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